

영주시 공고 제2024 - 973호

「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2일

영 주 시 장



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 변경(안 제17조)

나.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(안 제35조제2항제1호~제3호)

다.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(안 제63조제1항제1호~제4호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의견을 영주시장(참조 회계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우) 경북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 470)

받는사람 : 영주시장(참조 : 회계과장)

연락전화 : (054)639-6512

E-mail : nowkig@korea.kr, FAX : (054)639-6489

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”를 “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제35조제2항제1호 중 “100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, “4월”을 “4개월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200만원”을 “100만원”으로, “8월”을 “8개월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300만원”을 “200만원”으로, “12월”을 “12개월”로 한다.

제63조제1항제1호 중 “100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, “6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200만원”을 “1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300만원”을 “2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400만원”을 “3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·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)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③ 삭 제

④ (생 략)

제63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 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100만원 초과 : 6월 2회 분납
2. 200만원 초과 : 1년 4회 이내 분 납
3. 300만원 초과 : 2년 8회 이내 분 납
4. 400만원 초과 : 3년 12회 이내 분납

② (생 략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3조(변상금의 분할 납부) ① ---

1. 50만원 ----- 6개월 -----
2. 100만원 -----
3. 200만원 -----
4. 300만원 -----
--

② (현행과 같음)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	
검토사항	
주요내용	<p>※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 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.)</p>

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의견 제출자	소속 또는 주소		연락처
	성명	(서명 또는 날인)	